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5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박주민 · 이성윤 · 안태준

이기헌 • 윤준병 • 민병덕

박희승 • 이병진 • 염태영

조 국 의원(10인)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 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그런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잇따른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 등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 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대표성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감사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가 사후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제24조제5항 신설 등).
- 다.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제외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비공개 의결사항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라. 감사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함(안제15조의3 신설).
- 마. 감사원의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해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원장 책임 아래 수행한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 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사. 제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51조제2항).

법률 제 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 3. 행정안전부차관
-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 천 내용을 존중한다.
- 8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감사정책"을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으로, "주요 감사계획에"를 "감사계획의 변경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 17. 제24조제5항에 따른 상시 공직감찰의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 18.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
- 제1장제3절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공개한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의견 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4(감찰관 임용) ① 감사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감찰관을 둔다.
 - ② 감찰관은 감사원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 자를 임용하며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에서 임용한다.
 - ③ 감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및 모집·임용절차 등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 2.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3.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4.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 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 6.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7.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대상자 또는 감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직무감찰 중 긴급을 요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기어려운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개시 직후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의 대

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 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제본 생성 및 디지털 자료 탐색, 추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진술 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제기 등)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및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관계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조사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접수된이의제기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적법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중 "이를"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밖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내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감사원은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27조제4항을"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로 한다.

4.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 </u>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
	회) ①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기획재정부차관3. 행정안전부차관4.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

- <u>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u> <u>어야 한다.</u>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 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 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 여야 한다.
- ⑦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를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8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 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 제12조(의결사항) ① -----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2. ~ 15. (생략) <u><</u>신 설>

<신 설>

16. (생략) ② (생략) <신 설>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1. -----감사개시, 감사정 책, 감사계획----감사계획의 변경에----
 - 2. ~ 15. (현행과 같음)
 - 16.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 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 17. 제24조제5항에 따른 상시 공직감찰의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 18. 제35조에 따른 고발 등에 관한 사항
 - 19. (현행 제16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감 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공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 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

<신 설>

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 결로 비공개 의결사항의 공개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 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 여야 한다.
- 제15조의3(회의록의 작성 등) ① 원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회 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작성 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제16조의4(감찰관 임용) ① 감사 원은 내부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 로 감찰관을 둔다.
 - ② 감찰관은 감사원 외부를 대 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 여 적격자를 임용하며 10년 이 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 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③ 감찰관에 대한 구체적인 처

- 우 및 모집·임용절차 등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 제20조의2(감사의 기본원칙) 감사 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 1.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켜야한다.
 - 2.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 차를 준수한다.
 - 3.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4.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생략) <신 설>

다.

- 6.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 화되도록 한다.
- 7.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고는 감사의 대상자 또는 감 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④ (현 행과 같음)
 - ⑤ 직무감찰 중 긴급을 요하여 미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기 어려운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개시 직후 감사위 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27소(술식답면·사료세술·동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원은 현장에서 디지털 저장매체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의 대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반드시 기간을 정하거나 또

<신 설>

는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별추출할 경우 사전에 디지털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복제산성 및 디지털 자료 탐색, 추출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열람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변호사의 참여 및 이의제기 등)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및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 관계자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제35조(고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 은 감사과정에서 부당한 조사 절차,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의 적정 성 · 적법성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 려 주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 이 경우 그 밖의 중간수 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 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 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 를 직 · 간접적으로 전달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1조의2(내부 회계검사 및 직 무감찰의 보고) 감사원은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u>제27조제4항을</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u>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u>
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u>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수행한 자
②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를 <u>글</u>
③ (현행과 같음)